

# 외부강의 사전신고 등 준수실태 점검 결과

- 2018년도 -

2018. 10.

# 2018년도 외부강의 사전신고 등 준수실태 점검결과

## 1. 목적

- 청탁금지법 시행('16.9.28.) 이후 우리공단의 외부강의 사전신고 등에 대한 준수실태를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.

## 2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2018. 9. 5.(수) ~ 9. 14.(금)(8일간)
- 감사대상 : 본부 및 산하기관
- 감사반 : 본부 각 실·센터 주무부서장(행동강령책임자, 자율감사인등), 산하기관 자율감사인
- 감사범위 : '17. 9. 1. 이후 ~ '18. 8. 31.까지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
- 감사방법
  - 본부 각 실·센터 또는 일선기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이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실시
  - 일선기관별 관내 유관기관(7개 기관\*)에 소속직원 외부강의 요청 및 사례금지급 현황자료(별첨 양식 활용)를 요청하여 신고서와 대조 실시
    - \* 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산업안전협회, ○○협회, 한국산업간호협회,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,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

### 3. 중점 점검항목

- 외부강의등 신고의 적정성
  - 외부강의등 신고 유무 및 신고 시기의 적정성
  - 사전승인 및 사례금등 변경 등의 적정성
  - 유관기관 교육 지원 여부 등
- 외부강의등 월 제한 횟수 준수 여부
  - 외부강의등 월 3회 이상 실시 여부
- 외부강의등 사례금기준 준수여부
  - 외부강의등 사례금기준 준수 여부
  - 초과 수령 사례금 반환 절차 적정성 및 공단 강사료와 이중 수령 여부 등
- 출장비 이중 수령 등 복무관리 적정성
  - 외부강의등 시 여비 이중 수령 여부
  - 출장 신청 및 복명 적정성 등

### 4. 감사결과

#### 가. 총 평

- '18년 외부강의등 미신고 건수는 "없음".
  - ▶ 다만, 사전신고가 곤란하여 사후 신고기한(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2일 이내)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한 사례가 1건 적발
- 외부강의등을 사전신고 하였으나, 소속기관장이 승인(결재)을 외부강의 실시일 이후에 처리한 외부강의 승인(결재)이 지연된 사례가 6건(51회) 적발

- 외부강의 시 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한 사례가 3건, 산업안전보건 교육기관 대상 강사지원 금지 규정<sup>1)</sup>을 위반한 사례가 1건 적발
- 기타,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준수 위반이나 월 제한 횟수 초과 등에 대한 위반은 없음.

## 나. 주요 지적사항

### ■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준 위반 (경고)

#### <관련근거>

☞ 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제1항

#### □ 외부기관 요청회의 참석 시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미신고

○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등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·기타회의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 이라고 함)을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.

- 그런데, ○○○ ○급 A는 2018.6.15.(금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‘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 컨퍼런스 Free communication Oral Session’에 좌장(회의진행)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사례금 200,000원을 지급 받

#### 1)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23조제3항

③ 해당 교육을 통한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제45조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\*에서 요청한 교육은 지원할 수 없다. 다만, 후단의 경우 본부 주관부서의 장이 공단의 위상제고는 물론 산업재해예방 또는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\* 제45조에 따른 평가 대상 기관 : 법 제31조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, 제31조의2의 건설업기초교육기관, 제32조의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

은 사실에 대해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고 행사종료 후 6일이 경과한 6.25(월)에 지연 신고하였음.

☞ (신분상 조치)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'경고' 조치 요구

## ■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강의지원 제한 위반 (경고)

### <관련근거>

☞ 『산업안전보건교육 규칙』 제23조제3항

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강의 지원

○ 임직원은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법 제31조의 안전 보건교육 위탁기관, 제31조의2의 건설업기초교육기관, 제32조의 직무 교육 위탁기관 등의 평가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교육에 대해 강의를 지원하여서는 안됨.

- 그런데, ○○○ ○급 B는 2018.3.21.(수),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제32조의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'특검분석사 직무교육'에 강의를 지원하였고, 강의 대가 300,000원을 수령하였음.

☞ (신분상 조치)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 '경고' 조치 요구

## ■ 외부강의등 여비 이중 수령 (회수)

### <관련근거>

☞ 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 별표3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)

외부강의 시 요청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받고도 공단의 출장여비를 이중 수령

○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할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단에서 해당 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해서는 안됨.

- 그런데, ○○실 ○급 C는 2018.4.19.(목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학술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회의수당 150,000원과 여비 119,000원을 지급 받았고, 같은 날 동일 지역에 공단 업무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지급한 출장여비 136,670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음.

- 또한, ○○지사 ○급 D는 2018.4.10.(화) △△△교육원, 2018.6.20.(수) △△본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실시 후 여비(각 20,000원, 25,000원)를 포함한 사례금을 각각 200,000원과 205,000원을 지급 받았고, 같은 출장명목으로 공단에서 지급한 여비 53,810원과 33,340원을 각각 지급받아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음.

☞ (재정상 조치) 이중으로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회수 조치 요구

## ■ 외부강의등 사전승인 및 신고자 복무관리 철저(통보)

### <관련근거>

☞ 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

- 외부강의 신고서에 대한 소속기관장 승인(결재) 지연 : 51회
- 외부강의 시 출장신청 누락 : 2건

○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있으며, 소속기관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부강의등 실시일 전에 신고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함. 또한, 외부강의 신고자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속부서장에게 출장 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.

- 본부 등 6개 기관은 외부강의 신고서에 대해 소속기관장(또는 행동강령책임자)의 승인결재가 외부강의일 이후에 처리된 사례가 51건 있음.
  - 또한, ○○지사장은 출장신청을 하지 않고 외부강의(1건)을 실시하였고, ○○본부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○○직(○급) 직원이 외부강의 시 출장신청(18회)을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등 외부강의 신고자의 복무관리가 미흡한 실정임.
- ☞ (행정상 조치) 향후 임직원 사전신고등 절차를 준수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 통보

## 다. 처분 요구내역

- 신분상조치 : 1건(1명)
  - 경고 1건(1명) : 외부강의 신고지연 1건, 산업안전보건 직무교육 기관 강의지원 금지 위반 1건
- 행정상조치 : 1건
  - 통보 1건 : 외부강의등 사전승인 및 신고자 복무관리 철저
- 재정상조치(회수) : 1건
  - 외부강의 출장비 이중 수령 : 223,820원
- 총괄

(단위 : 원/명)

합 계			시정(금액)			징계 (인원)	경고 (인원)	주의 (인원)	개선	통보	현지 조치
총건수 (인원)	신분 건수	재정 금액	소계 (금액)	회수 (금액)	기타						
4 (2)	2	223,820	223,820	223,820	-	-	2 (2)	-	-	1	-

다. 위반 세부내용

대상기관명	점검 일자	위반사항	위반 세부내용	처분 요구	위반자		
					소속	직급	성명
○○○	9.5~ 9.14	외부강의 지연신고	2018.6.15.(금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'제 28차 한중일 산업보건 컨퍼런스 Free communication Oral Session'에 좌장 으 로 행사에 참여하였으나(대가 200,000원 수령), 사전에 소속기관장(행동강령책임자)에게 행사 참여사실을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고 행사종료 후 6일이 경과한 6.25(월)에 소속기관장에게 지연 신고하여 외부강 의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함.	경고	○○○ ○○실	○급	A
○○○		직무교육 기관 강의지원 금지 위반	2018.3.21.(수),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 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제32조에 따 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○○협 회에서 요청한 '특검분석사 직무교육'에 강의를 지원하고 대가 300,000원을 수령 한 사실이 있어 「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제23조제3항(평가대상기관 등에 교육지원 금지)을 위반함.	경고	○○○ ○○실	○급	B
본부		외부강의 출장비 이중 수령	2018.4.19.(목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학술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회의수당 150,000 원과 여비 119,000원 수령하였고, 같은 날 동일 지역에 공단 업무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지급한 출장여비 136,67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출장여비 를 이중 수령하였음.	회수	본부 ○○실	○급	C
○○지사			2018.4.10.(화), △△△교육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실시 후 강사료 180,000원과 여 비 20,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공단 출장여 비 53,810원을 이중 수령함 또한, 2018.6.20.(수), △△본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실시 후 강사료 180,000원과 여 비 25,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공단 출장여 비 33,340원을 이중 수령함	회수	○○지 사	○급	D
본부 등 6개 기관		외부강의 복무관리 미흡 및 승인 지연	○○지사 등 2개 기관에서 외부강의 시 출 장신청을 누락하는 사례 2건(각 1건)이 있었고, 본부 등 6개 기관에서 외부강의 신고 승인(결재)를 51회 지연하였음.	통보	-	-	-

※ 덧붙임 : 감사결과처분요구서 1부. 끝.



#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## 경 고 요 구

일 련 번 호 3-06-01

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○○○

관련자(소속기관) ○급 A(산업안전보건○○○ ○○실)

제 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준 위반

내 용

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제1항에 따라,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고 한다)을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서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임직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위 관련자는 2018.6.15.(금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‘제28차 한중일 산업보건 컨퍼런스 Free communication Oral Session’에 좌장(회의진행)으로 행사에 참여하여 회의수당 명목으로 200,000원의 사례금을 지급 받았다. 그런데, 관련자는 동 행사 참여 사실에 대해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지 않고 행사종료 후 6일이 경과한 6.25(월)에 소속기관장에게 지연 신고하였다. 관련자는 신고를 지연한 사유에 대해 행사개최 3일전(‘18.6.12.)에 행사 주최기관(○○협회)으로부터 회의 진

행(좌장) 요청을 받았고, 사례금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하지만, 외부강의등은 사례금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에 신고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, 부득이하게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를 마친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관련자는 행사 종료 후 6일이 경과한 날에(4일 지연) 신고함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.

**【표】 외부강의·회의등 지연신고 현황**

관련자			요청기관명	회의일시	수행목적	시간	신고일자	사례금
소속	직급	성명						
○○○	X	A	○○협회	'18.06.15. 16:00~17:30	회의 진행	1.5시간	'18.06.25.	200,000원

\* 자료: ERP 외부강의신고 실적을 토대로 작성

**관계기관 의견**      ○○○에서는 소속직원이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(산업안전보건○○○장)은 관련자에게 엄중 “경고” 조치하시기 바라며,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(경고)

[조치근거 :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1. 처분요구의 종류별 기준 1. 신분상조치 (2) 경고·주의, ○ 외부강의등 신고위반]

**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**

# 감사결과처분요구서

## 경고요구

일련번호 3-06-02  
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○○○  
관련자(소속기관) ○급 B(산업안전보건○○○ ○○실)  
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강의지원 제한 위반  
내용

「산업안전보건교육 규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르면, 임직원은 금전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및 법 제31조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, 제31조의2의 건설업기초교육기관, 제32조의 직무교육 위탁기관 등의 평가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교육에 대해 강의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.

그런데, 위 관련자는 2018.3.21.(수),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및 제32조의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‘특검분석사 직무교육’에 강의를 지원하였고, 강의 사례금 300,000원을 수령하였다.

【표】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강의지원 현황

관련자			요청기관명	강의일시	수행목적	시간	사례금
소속	직급	성명					
○○○	X	B	○○협회	'18.03.21. 09:00~11:00	강의지원	2시간	300,000원

\* 자료: ERP 외부강의신고 실적을 토대로 작성

관계기관 의견 ○○○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강의지원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(산업안전보건○○○장)은

관련자에게 엄중 “경고” 조치하시기 바라며,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(경고)

[조치근거 :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1. 처분요구의 종류별 기준 1. 신분상조치 (2) 경고·주의, ○ 외부강의등 신고위반]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

#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## 회 수 요 구

일 련 번 호 3-06-03

관 계 기 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사

관련자(소속기관) ○급 C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실)  
○급 D(○○지사 ○○부)

제 목 외부강의등 여비 이중 수령

내 용

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 별표3(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)에 따라,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 요청기관으로부터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해당 출장여비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.

그런데, ○급 C는 2018.4.19.(목), ○○협회에서 요청한 학술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여 회의수당 150,000원과 여비 119,000원 지급 받았고, 같은 날 동일 지역에 공단 업무로 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 136,670원을 지급 받아 같은 날 출장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였다.

또한, ○급 D는 2018.4.10.(화) △△△교육원과 2018.6.20.(수) △△본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실시 후 여비(각 20,000원, 25,000원)를 포함한 사례금을 각각 200,000원과 205,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, 외부강의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53,810원과 33,340원

의 여비를 이중 수령하였다.

【표】 외부강의 지원과 관련한 출장여비 수령 현황

관련자			요청기관명	강의일시	사례금(원)			공단 지급여비 (원)
소속	직급	성명			계	수당	여비	
계			-	-	674,000	510,000	164,000	<b>223,820</b>
○○실	1	C	○○협회	2018.4.19.	269,000	150,000	119,000	136,670
○○지사	2	D	△△△교육원	2018.4.10.	200,000	180,000	20,000	53,810
			△△본부	2018.6.20.	205,000	180,000	25,000	33,340

\* 자료: ERP 외부강의신고 실적을 토대로 작성

**관계기관 의견**      관련기관에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교육하고, 출장여비 이중수령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다.

- 조치할 사항**      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관련자(○급 C)에게 이중 수령한 출장여비 136,670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,(회수)
-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지사장은 관련자(○급 C)에게 이중 수령한 출장여비 87,150원을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.(회수)

[조치근거 :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(처분요구의 유형) 3. 재정상 조치 나. 회수]

**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**

# 감사결과처분요구서

## 통보

일련번호 3-06-04  
관계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
관련자(소속기관) ○○실장(상동)  
제목 외부강의 사전승인 및 신고자 복무관리 철저  
내용

공단 임직원은 『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』 제24조(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제1항에 따라,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“외부강의등”이라 한다)을 할 때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에서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있으며, 소속기관장은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에 대해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외부강의등 실시일 전에 신고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. 또한, 외부강의 신고자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속부서장에게 출장사실을 알리고 결재를 받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마땅하다.

그런데, 감사실에서 실시한 「2018년 외부강의 사전신고등 준수실태 점검」 결과, 외부강의 신고·처리결과 중 본부 등 6개 기관의 외부강의 신고서에 대해 소속기관장(또는 행동강령책임자)의 승인결재가 외부강의일 이후에 처리되어 지연 승인된 사례가 51건 확인되었다. 또한, ○○지사에서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를 수행하면서 출장신청을 누락(1회)하였고, ○○본부에서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○○직(○급) 직원이 외부강의 시 출장신청(18회)을 하지 않고 외부강의를 실시

하는 등 외부강의 신고자의 복무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.

이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건에 대해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가 지연되는 사례나 소속기관장 및 ○○직 직원의 외부강의 출장 신청 누락 사례 등은 2016년과 2017년 외부강의 감사 시에도 발생되어 매년 외부강의등 점검 시 문제점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.

따라서, 향후 임직원에게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등의 절차 준수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독려하는 등 향후 동일·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임직원 외부강의등 수행실태에 대한 주관부서(○○실)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.

**관계기관 의견**      ○○실에서는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소속기관장의 신속한 검토·결재를 당부하고, 임직원이 외부강의 시 복무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하였다.

**조치할 사항**    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(○○실장)은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의 신고서가 지연 승인되거나 신고자가 출장신청을 누락하는 않도록 임직원을 독려하는 등 향후에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향후 외부강의등 신고 후 승인(결재)이 완료되지 않은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 신고자나 승인(결재)을 지연한 승인자(기관장) 모두 처분 예정임을 임직원에게 공지 요망

[조치근거 : 감사결과 처분 양정기준 제13조(처분요구의 유형) 2. 행정상 조치 라. 통보]

##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 임 감 사